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20
----------	-------

발의연월일 : 2025. 10. 30.

발 의 자 : 안도결 · 김동아 · 정진욱
박민규 · 박균택 · 이용선
조계원 · 정준호 · 양부남
김우영 · 윤준병 · 이언주
정태호 · 서삼석 · 최혁진
김원이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 설비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송전사업·배전사업”을 “송전사업·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배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를 “송전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배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단위별 사업자는 송전사업자 및 해당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중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를 “송전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배전사업자”로, “유지·관리”를 “유지·관리(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경우 유지·관리 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 · 송전사업 · 배전사업 ·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1. ----- ----- <u>송전사업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 · 배전사업</u> ----- -----.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 · 송전사업자 · 배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2. ----- ----- <u>송전사업자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 · 배전사업자</u> ----- -----.
3. ~ 6. (생략) <u><신설></u>	3. ~ 6. (현행과 같음) 6의2. “ <u>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u>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u><신 설></u> 7. ~ 21. (생 략)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u>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u> 및 구역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u>유지·관리</u>하여야 한다.	<u>하는 사업을 말한다.</u> 6의3. “<u>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u>”란 제7조제1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단위별 사업자는 송전사업자 및 해당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등으로 구성한다.</u> 7. ~ 21. (현행과 같음)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u>송전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배전사업자</u>----- ----- ----- ----- ----- ----- ---<u>유지·관리(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경우 유지·관리 책무는 제외한다)</u>----- -----.
--	--